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해양에서의 유선 및 도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원 1명(경위 1명)을 증원하면서 해당 정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을 감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404명 중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및 형사 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수사국장 분장 사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사 2명, 6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1명(경위 2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5. 범죄의 수사

별표 4 중 총계 “520”을 “51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1”을 “417”로 하며, 총경 이하 “412”를 “408”로 하고, 일반직 계 “99”를 “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8”을 “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25”를 “12,60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25”를 “11,405”로 하며, 총경 이하 “11,416”을 “11,3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200”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88”을 “1,186”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33명
2)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12명
3) 해양오염방제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1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5명(경위 1명, 경사 3명, 6급 1명)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3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사국) ①·② (생 략)	제13조(수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u>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 한 기획·지도 및 조정</u>	1. <u>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 한 기획·지도 및 조정</u>
2. <u>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 석</u>	2. <u>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 석</u>
3. <u>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 획·지도 및 조정</u>	3. <u>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 6. 삭 제	4. <u>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 획·지도 및 조정</u>
7. <u>범죄의 수사</u>	5. <u>범죄의 수사</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0</u>	<u>515</u>	-5
경찰공무원 계	<u>421</u>	<u>417</u>	-4
·	·	·	
·	·	·	
총경 이하	<u>412</u>	<u>408</u>	-4
일반직 계	<u>99</u>	<u>9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8</u>	<u>97</u>	-1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625</u>	<u>12,603</u>	-22
경찰공무원 계	<u>11,425</u>	<u>11,405</u>	-20
·	·	·	
·	·	·	
총경 이하	<u>11,416</u>	<u>11,396</u>	-20
일반직 계	<u>1,200</u>	<u>1,198</u>	-2
3급 또는 4급 이하	<u>1,188</u>	<u>1,186</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